



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 uTradeHub 개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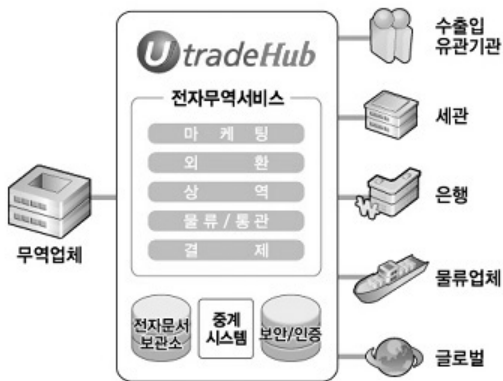
무역과 내수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에 발맞춤

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'04년부터 구축해 온 전자무역 서비스(uTradeHub)를 5월 9일(수) 전격 오픈하였다.

전자무역 서비스(uTradeHub)란, 무역업체 등이 마케팅부터 외환, 요건확인, 통관, 물류,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업무 처리 방식을 의미한다. 특히, 한미 FTA 체결 등 FTA 체결확산에 따른 관세의 철폐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점차 무역과 내수의 경계가 사라지면서, 전자무역을 기반으로 한 무역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,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무역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파란 불이 켜진 것이라 할 수 있다.



< uTradeHub 개념도 >



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원본성을 인정해주는 전자무역촉진법을 '05년도에 개정한 바 있으며, 전자무역 문서 보관소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사업을 '0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.

【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방법】

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전자무역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마케팅에서 대금결제에 이르는 전체 무역절차를 대·중소기업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접속방법을 제공하여 모든 기업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다.
- 대기업들은 자체 구축되어 있는 내부 시스템에 전자무역 솔루션을 탑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, 중소기업들은 전자무역 홈페이지(www.utradehub.or.kr)에 접속하여 손쉽게 이용 가능
- ② 전자무역 문서보관소를 중심으로 은행, 보험사, 상공회의소 등 무역유관기관들이 연계됨으로써 무역업체들은 한 번 발급 받은 전자무역문서를 전자무역 문서보관소에 저장한 이후, 이를 다른 기관에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, 종이서류의 제출이 사라지게 된다.
- ③ 또한, 무역절차에 따른 진행상황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 진행한 업무, 현재 진행 중인 업무, 앞으로 진행할 업무를 나타내주어 무역 초보자도 쉽게 무역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.
- ④ 무역업체가 한 번 입력한 정보는 전자무역 시스템에 저장되어, 다른 문서작성에도 자동 활용되므로, 동일한 정보를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.



【기대 효과】

새로운 전자무역 서비스를 통하여, 수요자인 무역업체 중심의 단절 없는 무역프로세스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.

- 이를 통하여 고임금, 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던 무역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국가 수출확대로 연결, 연간 1조 8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

또한, 전자무역에 관한 한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중국·일본 등을 선도하는 동북아 전자무역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.

- 이를 통하여, 향후 국가간 전자무역 인프라 연계시 우리나라가 전자무역 표준을 선도할 수 있으며, 전자무역 인프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[전자무역기반시설(uTradeHub) 구축 추진경과]

- '03. 7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구성 (위원장 : 국무총리)
- '03. 8 전자정부 31대 과제로 전자무역서비스 채택
- '03. 12 BPR/ISP를 통하여 비전, 4대 전략, 33대 세부 과제를 도출

※BPR/ISP : Business Precess Reengineering /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

- '04. 9 전자무역위원회에 “e-Trade Korea 2007” 보고
- '04. 12 전자무역 사업수행 (~'07)

[단계별 이행 방안]

올해는 전자무역 3차년도 사업을 진행한다. (5월말 발주예정)

- 네고관련 문서의 전자화 및 전자문서의 유통성 확보를 통하여 무역업체가 관련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

| 단계 | 사업기간 | 주요 추진 과제 | 예산(억) |
|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차 | '04.12~'05.6 | (LG CNS) 〈법·제도 개선〉 • 전자무역핵심인프라 시범구축 • 전자무역촉진법으로 법률개정 | 18(국고) |
| 2차 | '05.12~'06.11 | (삼성 SDS) 〈전자무역 플랫폼 구축〉 • 전자무역핵심인프라 본격구축 • 전자무역서비스환경 (무역업체용) 구축 • 전자무역 확산기반 마련 | 82 (국고 72, 민간 10) |
| 3차 | '07.6~ | 〈무역절차의 재설계〉 • 해외마케팅종합검색 시스템 구축 • 원스톱 요건확인 시스템 구현 • 물류와 통관단일창구 연계 • 수출입대금결제시스템 구축 | 150 (국고 80, 민간 70) |

도 uTradeHub를 통해 Nego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예정 및 운영

- ③ PCB 전후방 대·중소, 중소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제 구축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.

-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이라는 PCB 제품의 특성을 감안, 전자, 자동차 등 수요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정보 및 수요가 적기에 PCB 업계에 제공되고 필요한 기술자문,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교류 채널 구축(분기별)

- PCB 기업과 장비재료 기업간의 신기술개발 및 장비재료 국산화 공동사업 추진, 관련 PCB, 장비, 부품업체간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

산업자원부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5월중에 “PCB산업 발전전략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